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2023. 3.

수암유치원

Ⅰ. 학교안전계획 개요 ——— 1
1. 학교현황 ····· 1
2. 학교 안전 조직 ····· 4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6

Ⅱ. 학교안전 현황 ——— 9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9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11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13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13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17

Ⅳ.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 19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 19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 20

PART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학교현황

일반 현황

학교명	수암유치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전 화	02)2256-6100~1	홈페이지	www.수암유치원.kr
학교안전책임관(원장)	권희은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생 (명)	풀잎반	초롱반	샘물반	바다반	호수반	샛별반	햇살반	합계
	19	19	18	18	13	14	12	113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차량기사	보조교사	합계
	12	2	3	2	1	20

비상대피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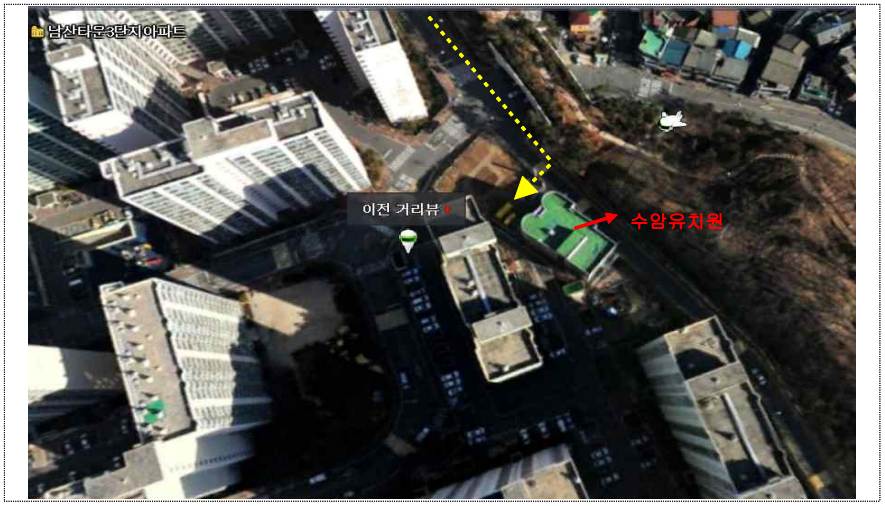

긴급차량 이동경로 ▬ ▬ ▸

○ 비상대피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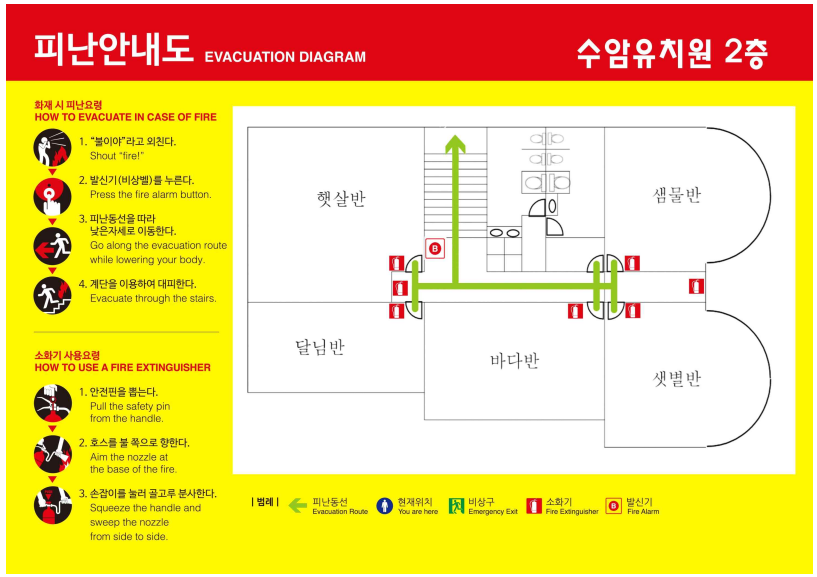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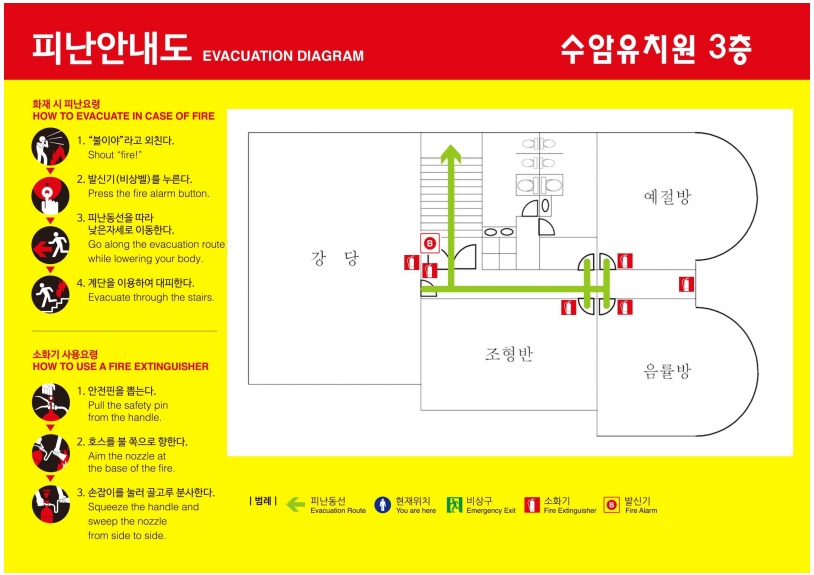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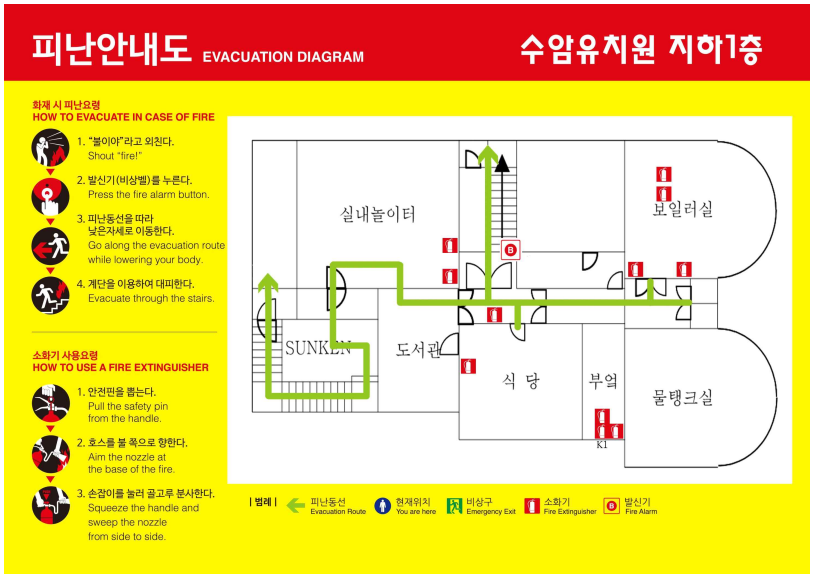

2 학교 안전 조직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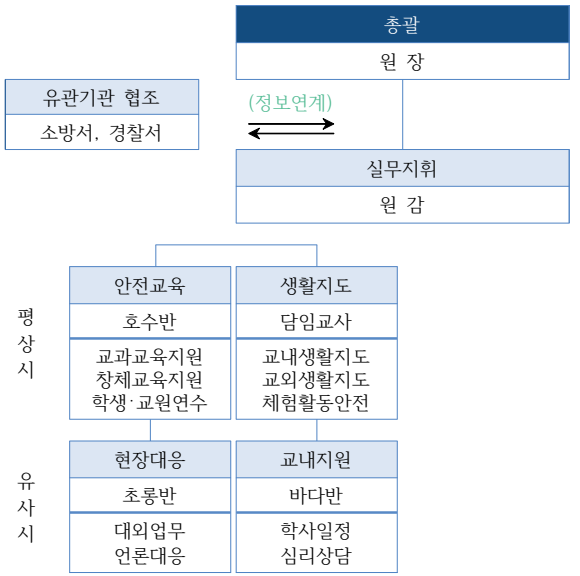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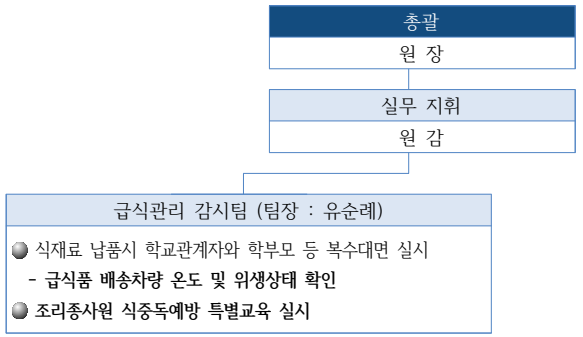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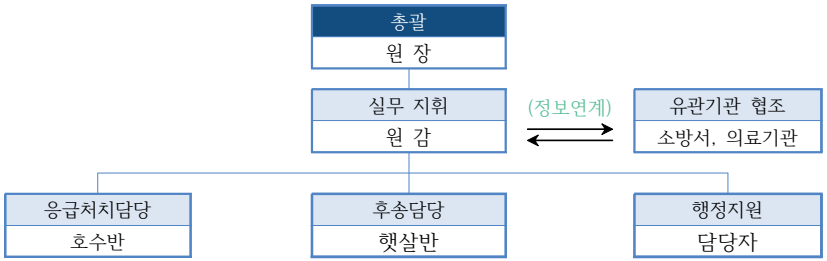

유관기관 협조체계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

기관명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순천향 대학병원	학부모
수암유치원	02-2234-0119	02-1566-0112	02-709-9114	운영위원장

학교안전계획(공개용) 학교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미게시
O	

3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전사고 관리지침

○ 안전사고 발생 시 “맘 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8)” 및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

재난 대응 지침

○ 안전사고 발생 시 “맘 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8)”, “흉기난동(무단침입) 대응 학교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8)” 및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18)” 에 따라 대피 실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

1) 연 1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 결석 시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 실시, 2일차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2) 2022학년도 미인정결석 유아 중 아동학대 신고 현황 제출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유아에게 아동학대(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있는지 잘 관찰하고, 유아가 사전에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인 유아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제22조의 2)

❍ 미인정결석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미인정결석 유아 중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미인정결석 유아 조치 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비상 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원장(학교안전책임관)

○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 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사고지휘관 (원감/부장교사)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

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교사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지침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폰,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지침에 따라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한다.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학생들의 인원을 확인한다.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 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4. 보조교사,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5. 응급처치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행정실 및 교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벨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7. 급식 업무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필요량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8. 학생
○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재난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 역량을 학습한다.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9. 학부모/보호자
○ 학교 안전, 폭력 예방,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PART Ⅱ

학교안전 현황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 사이버교육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 교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코로나 발생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및 놀이꾸러미를 사전에 계획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
- 유아 대상 연간 안전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실시
- 원내 방역 및 차량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 및 감염을 방지
- 사고 발생, 확진자 발생, 식중독 발생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매뉴얼을 작성

전년도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2년)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4.2	2021	12	7	19				
	2022	11	10	21	11	10	21	100%
	2023	12	10	22	6	10	16	72.3%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2년)
  - 학생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실시 유무 (해당사항 없음)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율

교육대상 교직원 수(명) (A)	교육실시 교직원 수(명) (B)	실시 비율(%) (C=B/A)
19	19	100

- **안전 영역별·교육과정 영역별 학생 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2년)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시간 / 안전 영역(필수이수시간)
생활안전(13)
교통안전(10)
폭력 및 신변보호(8)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재난안전(6)
직업안전(2)
응급처치(2)
계(51)

- **2022학년도 재난대비훈련 실적(실시 횟수)**

구분	재난대비훈련 유형	
	화재	
	자체	합동
훈련 실시 횟수(회)	10	1

- **2022학년도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실적('23. 2월말 기준)**

편성
O

교부액 (A)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집행액 (B)
500,000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

○ 학교안전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생활안전	위험	외부추락방지장치 설치	설치
		손끼임 방지장치(건물현관)	설치
		손끼임 방지장치(교실)	설치
		체육관(강당) 존재	있음
		옥상출입 관리	관리
	관리	학사일정별 세부안전계획 수립	모두 수립
		학사일정별 사전안전교육 실시	모두 실시
		교직원의 안전관련 역할,임무 인지 및 공유	모든 교직원
		안전부(장) 전담	겸임
		안전관련 행사(캠페인 등) 운영	운영
교통안전	위험	교내 보차도 분리	분리
		학교주변 보행로 확보	분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지정
		학교주변 과속방지 시설 설치	모두 설치
		학교주변 과속단속장비(CCTV) 설치	모두 설치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 등) 설치	모두 설치
		통학버스 운행	운행
		통학버스 동승자여부	있음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설치
	관리	등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하교 교통지도 실시	실시
		등·하교 시 승·하차 공간 마련	있음
폭력 및 신변안전	위험	인근 경찰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5분 이하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중복응답)	학교 출입구
		CCTV 안내판 설치	설치
		출입·방문절차 안내판 설치	설치
		[실내]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내 전체
			실내 200만 이상
		[실외] 전체 CCTV, 200만 화소 이상 CCTV	실외 전체
			실외 200만 이상
재난안전	위험	인근 소방서에서 학교까지의 도착시간	시간(10분)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넓이의 도로 확보	확보
		발화위험성이 높은 시설 난연재료 마감여부	모든 시설 마감
		피난안내 표지판 설치(중복응답)	층별 설치
	관리	전교생 대상 재난대비훈련 실시횟수(2019,2020)	2019(12회)
			2020(12회)
직업안전	위험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내 별도보관함 설치여부	구분
			설치

○ 필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상태 확인 및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각 교실과 복도, 계단 등 실내외 CCTV 가 설치되어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음

○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을 완료하고,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음

○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연수를 통해 필수 법정 연수 및 안전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매월 화재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함

PART Ⅲ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 연간 활동계획안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 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관련 훈련 실시
- 연 1회 소방서와 합동훈련 실시

안전약자(요보호학생) 현황 및 관리방안

- 요보호 학생 및 교직원은 작성일 현재 0명이지만, 만일 사건·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활동 제공
- 알레르기 환아를 사전에 파악하여 급·간식 지도 시 유의하여 지도

통학차량 안전관리

- 매일 통학차량 운영 전·후로 차량 점검 및 점검표 작성·보관
- 안전운행기록을 매일 기록하고, 분기별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 원장,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모든 교사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통학 안전지도 교육 내용 및 교육 횟수	연간 30분씩 20회
통학 안전지도 방법 및 담당자 현황	담당자 지정하여 안전교육
등하교 지도 방법 및 내용	통학버스에 교사 탑승
스쿨버스 및 차량 출입 관리 현황 및 방침	차량일지 작성

- 스쿨존 안전시설의 개선과 설치를 위해 지자체, 경찰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설치완료
  (노후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학교시설 안전점검

○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운영**

-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점검 시행
-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구분	보관장소	관리 방법
평상 시	1층 선생님방 열쇠보관함	각 교실 등 열쇠번호 교체시 즉각 교무실에 변경 처리

○ **보관구역(식료품, 유해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

구 분	
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구역	
식료품 보관 및 사용 구역	
약품 보관 및 사용 구역	
위험물질 관리 방침	

○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방송 시설
전화(인터폰)

○ **비상탈출구, 2차 탈출구 관리**

구 분	
비상 탈출구	
2차 탈출구	

○ **소화기 관리 방침**

층개수		보관장소	소화기 관리	비고
분 말 소 화 기	12	각 교실 및 복도	소화기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 - 구입일시 : 소화기 표시 - 충약일시 : 매월 검사 시 충약 필요시 - 관리방법 : 매월 검사	
자동확산소화기	3			
투 척 소 화 기	50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

1) 학교 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2상반기 : 학교 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및 결과 보고(교육시설안전과)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에 따라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 및 절차**

구 분	내 용	
학교 출입 지점 현황	교문 수	2
	건물별 현관 수	2
학교 출입 지점 안전 관리 방침 내용	현관은 앞문만 사용하며 잠금장치 사용	

○ **방문객(차량)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현관출입 잠금장치로 교직원의 허가 없이 출입금지

- 외부인 차량 유치원 내 주차금지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 및 절차**

구 분
학부모 음식(간식) 제공 허용 여부 및 방침과 절차
택배 수령 방침 및 절차 (학습 관련 물품 및 개인 물품)
급식 자재 배달 차량 및 택배 기사 출입 통제 방침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학교 안전교육 연간 계획(2023)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 모험이가 처음 유치원에 온 날	• 교통안전 ox퀴즈	• 내 몸에는 이름이 있어요	•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화학제품	• 불이 났어요		
•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안전한 체육시간	• 안전벨트를 매요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 어른이 마시는 음료와 내가 마시는 음료는 달라요	• 미세먼지, 침묵의 재난		
• 안전하게 체험해요	• 어른 손을 잡고 걸어요		• 스마트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 일할 때 필요한 안전 장비가 있어요	
• 귀여운 강아지가 없어졌대요 • 귀여운 똘이를 돌봐주세요	• 대중교통을 바르게 사용해요	• 뭐라고 말할까요?	• 담배는 해로워요			• 알려요, 알려요
• 안전한 물놀이	• 비 오는 날 안전하게 길을 걸어요	•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담배와 술은 나빠요	• 태풍, 홍수		
• 제자리에서 기다려요				• 폭염에 대처해요		
• 신체놀이를 할 때 조심해	•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이야기	• 나답게 너답게	• 친구가 달라졌어요			
• 겉모습과 마음이 달라요	•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요	•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집을 흔들어		• 도움이 필요해요
• 꼭꼭이 미아 예방 송	• 버스와 기차를 탔어요	• 싫다고 말해요. (꼭꼭꼭)	•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지켜요			
• 줄을 서서 순서를 지켜요	• 승합차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 부모, 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주신 약만 먹어요	• 보글보글 손씻기	• 안전 장비를 찾아라!	
• 겨울철 안전과 건강		• 나는 특별해요	•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요			
•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 차에서 바르게 앉아요		• 약을 올바르게 먹어요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3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교원	직원
인원	12	10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3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학생 (A)	교직원 수		
	교원	직원	소계 (B)
118	12	10	22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학교 자체계획 수립 여부(2023년)

수립
O

PART Ⅳ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